
보험료정산특약 II

약관 목차

- 제 1 조 [특약의 적용]
- 제 2 조 [피보험자의 통지]
- 제 3 조 [보장개시에 관한 사항]
- 제 4 조 [보험료 정산기간에 관한 사항]
- 제 5 조 [예치보험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6 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제 7 조 [협정서의 내용]
- 제 8 조 [준용규정]

보험료정산특약 II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특약의 적용]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이하 ‘보험료 정산’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보험료정산특약 II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를 체결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통지]

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협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 통지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증가 및 감소 사항을 기재한 피보험자 명부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장개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증가 및 감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피보험자 명부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정산 전이라도 제 2 조 [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한 피보험자 명부에 기재된 상품가입일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을 하며, 피보험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명부에 기재된 해지일(탈퇴일)까지 보장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 2 조 [피보험자의 통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가입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가입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자는 추가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가 제 2 조 [피보험자의 통지]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협정서에서 정한 경우

제4조 [보험료 정산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기간 중 : 매월, 매 3 개월, 매 6 개월, 매년 또는 기타 협정서에서 약정한 주기
2. 계약기간 이후 : 보험기간 만료 후 사전에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

제5조 [예치보험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제 4 조 [보험료 정산기간에 관한 사항]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협정서에서 정한 정산일(이하 ‘정산일’이라 합니다)에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6 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① 보험기간 중 회사에 통지한 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계약자가 추가가입자에 대하여 납입할 보험료와 회사의 탈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액의 정산은 정산일에 보험료를 정산하며, 세부 사항은 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자의 경영상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일을 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협정서의 내용]

- ①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회사는 협의를 통해 이 특약의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1. 계약협정의 목적
 - 2. 보장개시에 관한 사항
 - 3. 피보험자의 통지시기
 - 4.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5. 예치보험료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협정서의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